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중인 월간 수급보고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주간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월간 수급보고 대상을 “그 밖의 석유제품”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변경(「시행규칙 별표8」 개정)

나. 주간 수급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 완화(「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 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4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songho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1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바이오의약품용 압력용기는 별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업체가 매년 자발적으로 용기 부식·균열 등을 점검하고 있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지 않은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5의 비고4 다목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의 압력용기 검사유효기간 완화 규정 신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5(제31조의8제1항 관련) 비고4의 안전검사유효기간을 검사유효기간으로 변경

다. 개정안 시행일 명시 및 신설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등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전화: 044-203-5145, 팩스: 044-203-4759, 이메일: hik75@motie.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159외 3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9월 23일